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 관련 정보의 부정사용·누설 행위 구체화 및
처벌 기준 정비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76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교육 관련 정보의 부정사용·누설 행위 구체화 및 처벌 기준 정비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5. 1. 6.
3. 회부연월일: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된 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4년 5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교육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개방·제공하며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개방·제공 과정에서 교육부장관 등이 민감정보에 대해서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복원하여 학생 정보가 유출되거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정사용에 관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11조).

Ⅲ. 검토의견

□ 교육 관련 정보의 부정사용·누설 행위 구체화 및 처벌 기준 정비

개정안은 교육 관련 정보의 부정사용·누설 행위를 구체화하여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학생 개인정보나 학교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나 학교소재 지역을 서열화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현행법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상향함으로써, 정보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은 자는 <u>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u> <u>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u>

교육부는 2024년 5월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폭넓은 교육데이터 제공으로 정책연구를 활성화하여 증거 기반 교육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 제공과 진로·진학 정보 접근성 제고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교육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확대는 당초 취지와 같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적용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측면이 있으나, 학생 개인의 학업 성적 등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지역별·학교별 정보가 서열화 등에 사용될 우려도 존재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방안」에서 교육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함)」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개인정보 등은 비식별처리 후 제공하며,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지역·학교 서열화와 개인정보의 고의적인 재식별처리를 금지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등이 비식별처리된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거나 누설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개정안은 부정사용·누설 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하고 이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보다 높은 수준의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관련 정보의 부정사용 또는 누설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부터 자료¹⁾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본래 목적 외의 부정사용 또는 누설을 금지하고(안 제8조의2제4항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재(안 제11조제2항)를 유지하면서,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학생 개인정보나 학교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나 학교 소재 지역을 서열화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8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수집·연계·가공한 자료를 의미함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 교육관련기관: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 학교: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제외)

- 교육행정기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시·도의 교육 관서

- 교육연구기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정보: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표 1] 교육 관련 정보 금지행위 및 벌칙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금지행위	벌칙
개정안	현행	• 본래의 목적 외의 부정사용 또는 누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	•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학생 개인정보나 학교명을 사용하거나 누설 •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나 학교 소재 지역을 서열화하거나 누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교육기관정보공개법」 현행 해당 조항 및 개정안 정리

개정안과 같이 학생 개인정보, 학교명, 학교 소재 지역을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대해 현행 보다 높은 수준의 벌칙이 규정될 경우, 교육 관련 정보를 부정사용하거나 누설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인지되고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신설되는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안 제8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는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 대상이 특정되어 부정사용 또는 누설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처리는 현행법에 따라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준수되어야 하는 조치²⁾인

2)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점을 고려할 때, 식별 가능한 상태로 자료를 복원하여 부정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벌칙이 가해지는 금지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 8조의2제4항제1호에도 규정된,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정안과 같음)
1.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학생 개인정보나 학교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	2.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학생 개인정보나 학교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
3.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나 학교 소재 지역을 서열화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	3.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 학교나 학교 소재 지역을 서열화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

다음으로, 신설되는 벌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부정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³⁾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⁴⁾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⁵⁾ 개인정보의 처리,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법률의 취지가 상이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용이나 누설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부정사용·누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과 유사하게 교육 관련 정보의 부정사용·누설에 대한 금지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서 ‘학생 개인정보, 학교명, 학교 소재 지역’을 부정사용·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⁶⁾를 부정사

4)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누설하는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 관련 정보의 부정사용·누설을 개인정보의 부정사용·누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육 관련 정보의 부정사용·누설에 대한 피해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기관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률의 취지가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의 부정사용·누설에 대한 금지행위와 벌칙을 규정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수준을 판단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 정보 관련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 사례

구분	금지행위	벌칙
초·중등 교육법	· 교육비 지원을 위한 학생 및 가구원의 재산 평가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학생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 사유로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자가 해당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초연구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제공하거나 누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자력안전 소통법	·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초·중등교육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정리(법률 조항은 참고자료1. 참조)

6)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안 제8조의2제4항: 일부수정

-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유출, 학교·지역 서열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사용과 관련된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행정적인 관점에서 순위나 등급 평가를 매기는 경우*까지 일괄금지하면 연구 제한 사항이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으므로, 민감 자료인 성적 순위·등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8조의2제4항제3호의 자구를 일부수정할 필요가 있음.

* 예: 늘봄학교 이용률, AI-DT 이용률 등

** 예: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 평가

※ (수정안)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3.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성적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나 학교 소재 지역을 서열화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

○ 안 제11조: 일부수정

- 데이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처벌수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함.
- 다만, 학술연구 진흥 등 공익적 목적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안 제11조제1항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안)

제11조(벌칙) ①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의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제 개인정보를 목적 외 부정사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달리,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8조의2 제3항에서는 개인·법인·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초연구법」, 「산학협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을 때, 통상적인 목적 외 사용 또는 비밀 누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처벌 수위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자료>

1. 정보 관련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 사례 법률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62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14조의2, 제14조의3 또는 제14조의4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벌칙)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분석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제1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연계·가공·분석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원자력안전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